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도 참고자료			
보도	2017. 7. 14.(금) 조간	배포	2017. 7. 12.(수)	
담당부서	상호여전감독국	김태경 국장(3145-7550), 이상민 팀장(3145-7552)		

## 제 목 : 금융꿀팁 200선 - ⑤ 카드 소득공제, 최대로 받는 노하우

-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과정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실용금융정보(금융꿀팁) 200가지를 선정, 알기 쉽게 정리하여
  - 매주 1~3가지씩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안내하고
  - 동시에 2016.9.1일 개설한 금융소비자정보 포털사이트 “파인”(FINE)에도 게시하고 있음
- 이에 따라 쉰 일곱번째 금융꿀팁으로, “카드 소득공제, 최대로 받는 노하우”를 별첨과 같이 안내해 드림

### <별첨> 금융꿀팁 200선 - ⑤ 카드 소득공제, 최대로 받는 노하우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제 목	카드 소득공제, 최대로 받는 노하우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사례1)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직장인 박명호(36세, 가명)씨는 매년 1천 5백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연말 소득공제를 통해 <b>12만원 가량을 환급받았음</b></li> </ul> <p>그런데 최근 자신과 연봉이 비슷한 직장동료 최성수(37세, 가명)씨의 경우 카드 세테크를 통해 <b>두 배나 많은 약 25만원을 환급받은 사실을 알게되었음</b></p>
사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사례2) 평소 알뜰하기로 소문난 주부 김영은(42세, 가명)씨는 집 근처 시장에서 청과물 등을 구입하는 등 <b>전통시장에서의 카드사용액(약 3백만원)을 늘린 결과, 환급액이 예년보다 15만원 가량 많아졌음</b></li> </ul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사례3) 입사 초년생인 정태윤(30세, 가명)씨는 <b>자동차를 구매하면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목적으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</b></li> </ul> <p>그러나 <b>신차(新車)를 카드로 구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</b> 사실을 나중에야 알고는 크게 낙담하였음</p>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● (사례4) 직장인 이민수(32세, 가명)씨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나누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신문기사를 읽었으나 <b>두 개의 카드를 번갈아 사용하는 것이 귀찮아 하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음</b></li> </ul>

☞ 카드 소득공제 노하우를 활용하여 세금부담을 줄여보세요!

### 【 카드 소득공제 최대로 받는 노하우 7가지 】

- 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
- ② 대중교통 . 전통시장 자주 이용
-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길 필요
-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
-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
- ⑥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 . 체크 겸용카드 고려
- ⑦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

#### 꿀 팁

##### ① 신용카드 보다는 체크카드 사용

근로자인 소비자는 연간 카드사용액이 연봉의 25%를 초과하는 경우 25% 초과분의 15~3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간 **3백만원 한도**\*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\* 보다 정확히는 총급여액의 20% 해당액과 3백만원 중 작은 금액이며, 만약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공제 한도금액은 2백만원임

그런데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**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차이날 수 있습니다.**

즉 **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%로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 15% 보다 2배나 높습니다.** 따라서 체크카드를 사용할 경우 신용 카드 보다 소득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.

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3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연간 1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보다 약 18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< 신용·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>

연봉수준	카드사용액	세금환급액		
		체크카드 사용시(a)	신용카드 사용시(b)	차이(a-b)
3천만원	1천 5백만원	약 37만원	약 19만원	약 18만원
5천만원	2천 5백만원	약 50만원	약 31만원	약 19만원
7천만원	3천 5백만원	약 79만원	약 69만원	약 10만원

따라서 신용카드 보다는 **체크카드 사용을 생활화하는 것이야 말로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.**

## ② 대중교통·전통시장 자주 이용

지하철·버스 등 **대중교통 이용요금과 전통시장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통상적인 카드 소득공제 한도금액(3백만원)과는 별도로 각각 1백만원까지 추가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**

예를 들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봉 5천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(예: 각각 1백만원)을 포함하여 연간 2천 5백만원을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금액이 없는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#### <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에 따른 세금환급액 예시 >

연봉수준	체크카드 사용액	세금환급액		
		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없는 경우 (a)	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사용액이 각각 1백만원 있는 경우 (b)	차이(b-a)
3천만원	1천 5백만원	약 37만원	약 37만원	-
5천만원	2천 5백만원	약 50만원	약 60만원	약 10만원
7천만원	3천 5백만원	약 79만원	약 95만원	약 16만원

따라서 카드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**대중교통이나 전통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그 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는** 것이 좋습니다.

참고로 **KTX, 고속버스 요금은 카드로 결제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, 택시, 항공요금 등은 추가 공제혜택 대상이 아닙니다.** 그리고 **추가 공제혜택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가능합니다.**

### ③ 현금영수증도 잊지말고 챙길 필요

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카드 사용금액이 연봉의 25%를 초과해야 합니다. 그리고 이 조건을 충족한 사람에 한하여 **25% 초과 후 카드 사용 금액을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**

그런데 이 때 카드사용금액에는 신용·체크카드 사용금액 뿐만 아니라 **현금영수증이 발급된 현금결제금액, 백화점카드 사용금액, 기명식 선불카드 결제금액 등도 포함됩니다.**

따라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평소 **현금결제 후에도 현금영수증을 챙기는 것**\*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.

\*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국세청 홈페이지나 ARS(☎126) 등을 통해 등록해 놓으면 현금결제시 휴대폰 번호 입력만으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효과가 발생

### ④ 소득공제에 유리한 배우자의 카드 집중 사용

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**카드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연소득의 25%를 초과해야 해당됩니다.**

그리고 연소득과 카드결제금액은 **부부간 합산되지 않고 각각 산정됩니다.** 즉 남편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남편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남편 소득의 25%를 넘어야 하고, 아내가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내명의로 된 카드의 결제금액이 아내 소득의 25%를 넘어야 합니다.

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소득공제 문턱(연소득 25%)을 넘기 위해서는 **배우자중 소득이 적은 사람의 카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**

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5천만원, 아내 연봉이 4천만원일 때 두 사람 중 주로 아내의 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 요건\*을 보다 쉽게 충족할 수 있습니다.

\* 남편의 소득공제 문턱 : 1,250만원 (5천만원 x 25%)  
아내의 소득공제 문턱 : 1,000만원 (4천만원 x 25%)

**한편 연봉 차이가 큰 맞벌이부부는 소득세율 적용구간이 달라 소득이 많은 배우자의 카드를 집중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금액 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.**

예를 들면 남편 연봉이 7천만원, 아내 연봉이 2천만원일 때 신용카드사용액 전부(예: 연 2천 5백만원)를 소득이 많은 남편의 카드로 결제하면 아내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보다 약 10만원을 더 환급\*받을 수 있습니다.

\* 남편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: 약 30만원  
(카드사용액(2천 5백만원) - 연봉(7천만원) × 25%) × 신용카드 소득공제율(15%) × 소득세율(지방세 포함 26.4%)

아내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환급액 : 약 20만원  
(카드사용액(2천 5백만원) - 연봉(2천만원) × 25%) × 신용카드 소득공제율(15%) × 소득세율(지방세 포함 6.6%)

따라서 맞벌이부부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으려면 남편과 아내의 소득금액과 예상카드결제금액 등을 고려한 연말 소득공제 혜택(환급금)을 잘 따져보고 **부부가 사용할 카드를 선택한 후 그 카드를 집중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.**

참고로 **가족카드**의 경우 누가 사용하든 **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가 받습니다.**

\* 예: 남편(본인)이 발급받은 가족카드(명의자 : 아내)의 소득공제 혜택은 카드명의자인 아내가 받음

한편 연간 소득이 없는(또는 1백만원 이하) 배우자 및 부모, 자녀등의 카드 사용액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맞벌이 부부는 남편이 자녀의 기본공제(150만원)를 받으면 해당 자녀의 카드사용액은 남편만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

## ⑤ 소득공제 제외대상 거래 사전 인지

물품 구입비용이나 서비스 이용대금을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모두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.

즉 신차(新車) 구입비용, 공과금, 아파트관리비, 보험료, 도로통행료, 상품권 구입비용, 등록금·수업료, 해외에서 결제한 금액, 현금서비스 금액 등은 카드로 결제하더라도 **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.**

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**중고 자동차 구입비용**은 카드로 결제하면 **결제금액의 10%까지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.**

예를 들어 중고 자동차 구입시 2천만원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결제금액의 10%인 2백만원만큼 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.

따라서 카드 **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거래와 대상이 되지 않는 거래를 사전에 인지하고 카드결제를 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.**

## ⑥ 카드 부가서비스에 관심있다면 신용·체크 겸용카드 고려

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카드사용금액이 연봉의 25%를 초과하여야 하는데, 이러한 공제 문턱을 넘기까지의 카드사용금액은 신용·체크카드 어느 것이든 상관없습니다.

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, 일부에서는 연봉의 25%까지는 부가서비스(포인트 등) 혜택이 많은 **신용카드를 사용하고, 25%초과 후에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** 것이 유리하다고 주장합니다.

### < 신용·체크카드 분할 사용 예시 >

연봉수준	1) 신용카드 사용 (연봉×25% 이내)	2) 체크카드 사용 (연봉×25%~소득공제 최대금액*)
3천만원	~750만원	750~1,750만원
5천만원	~1,250만원	1,250~2,250만원
7천만원	~1,750만원	1,750~2,750만원

\* 연봉×25% + {3백만원(통상 소득공제 최대한도) ÷ 30%(체크카드 공제율)}

그러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은행과 카드사들이 **체크카드에도 신용카드 못지않게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**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을 무조건 신뢰할 필요는 없습니다.

자신이 가지고 있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에 부여되는 부가서비스 혜택을 면밀히 살펴보고 **부가서비스 활용가능성과 과소비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** 것이 바람직합니다.

한편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체크카드와 신용카드를 적절히 나누어 쓰는 것이 번거롭고 절제있는 지출을 원하는 소비자는 **신용·체크카드 기능이 모두 부여된 겸용카드의 사용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**

신용·체크 겸용카드는 고객이 미리 체크카드 이용금액을 정해 놓은 후(카드사에 통보) 카드사용액이 **사전에 정한 금액 이내**이면 고객의 은행잔고에서 카드사용액이 즉시 **인출**(체크카드 기능)되고,

**그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잔고금액 이상으로 카드를 사용하면 통상의 신용카드와 같이 익월(또는 할부기간)에 청구되는 카드를 말합니다.**

예를 들어 고객이 월 50만원을 체크카드 결제한도로 정해 놓으면 카드사용액 50만원까지는 은행계좌에서 즉시 인출되고, 50만원을 초과하면 신용카드로 결제되어 한달 후 고객에게 청구 됩니다.

- \* 참고로 겸용카드는 카드사용액이 고객의 계좌잔액을 조금(1원)이라도 초과하면 사용금액 전부가 신용카드로 결제됩니다.(예, 카드사용액이 3만원이나 은행잔고가 5천원일 경우 3만원 전액이 익월에 청구)

#### < 신용·체크 겸용카드를 발급중인 카드사(17.6말 현재) >

구 분	전업카드사	겸영은행	계
발급 카드사	4개사 (KB국민, 현대, 우리, 롯데카드)	6개사 (농협, 기업, 대구, 경남, 광주, 수협은행)	10개사

### ⑦ 연말이 되기 전에 카드사용액 미리 체크

카드 소득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**연말이 되기 2~3달 전**(예, 10월경)에 연초부터 사용한 **(누적)카드사용액을 미리 체크**해 보고 **남은 기간동안 카드를 적절히 사용**하는 것도 필요합니다.

참고로 국세청에서는 매년 10월경 「연말정산 미리보기」 서비스 ([www.hometax.go.kr](http://www.hometax.go.kr))를 통해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액 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동 서비스를 활용하면 편리 합니다.